

## 유보목록 개요

◇ 서비스 교역확대를 위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전문직서비스 등 경쟁력 제고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단계적 개방에 합의

▶ 우리측 유보 개수 : 총 91개 (현재유보 47개, 미래유보 44개)

\* 한·싱가포르 FTA : 80개 (현재유보 50개, 미래유보 30개)

▶ 미측 유보 개수 : 총 18개 (현재유보 12개, 미래유보 6개)

◇ 미국의 개방된 서비스·투자 시장 확보

- 미국은 매우 제한된 서비스·투자 분야만 유보함에 따라 향후 우리 서비스업체의 대미진출 기회를 안정적으로 확보

### < 유보안의 종류 >

① 현재유보(Annex I) : 협정상 의무에 합치하지 않는 현존 조치를 나열한 목록으로, 자유화후퇴방지 메커니즘이 적용됨.

\* 자유화후퇴방지 메커니즘(ratchet mechanism) : 현행 규제를 보다 자유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수는 있으나, 일단 자유화된 내용을 뒤로 후퇴하는 방향으로는 개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

(예) 외국인투자 협정 제한이 30%일 경우, 그 이하인 20%로 하향 조정하거나, 30%를 40%로 상향조정했다가 그 이후에 다시 40% 미만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.

② 미래유보(Annex II) : 향후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는 현존 비합치 조치 또는 전혀 새로운 제한 조치가 채택될 수 있는 분야를 나열한 목록

\* 한미 FTA의 서비스분야는 Negative 방식을 채택함에 따라 상기 Annex I 또는 II에 기재되지 않은 분야는 상기 4대 의무에 대한 제한이 없는 것으로 간주됨.

※ 그러나, 상기 4대 의무와 무관한 비차별적인 규제(예 : 면허·허가인가 요건 등)는 「국내규제」 조항에 의거, 국내정책결정에 따라 자유로이 유자신설개정할 수 있음

\* 참고로, 서비스와 투자 분야는 단일 유보안을 작성하는 바, 투자 chapter의 4가지 일반적 의무(NT, MFN, PR, SMBD)에 대한 비합치 조치도 포함함.

- 금융 유보안은 별도로 작성

## 투자 관련 주요 유보

### ■ 공공질서 유보

- 우리측은 공공질서(public order)를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,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NT 및 PR 의무에 반하는 필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유보를 기재하여 이에 대한 규제권한을 확보하였음.
  - 동 유보는 미국이 과거 체결 FTA에서 콜롬비아를 제외하고는 인정한 바 없음.

- 동 유보 조치의 발동 근거로 우리 “외국인 투자촉진법” 제4조는 공공질서외에도 보건, 환경, 공서양속을 두고 있으나, 우리측은 아래를 감안, 공공질서로만 한정하기로 합의

- 실제로 동 법은 과거 발동된 사례가 없고,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고자 하는 우리 정책상 발동될 가능성에 거의 전무
- 실제 발동가능성 없는 보건, 환경, 공서양속 등 투자제한 사항을 제거함으로써 미국의 대한 투자유치 제고 효과

### ■ 정부권한 행사서비스 예외

- 우리측은 정부권한행사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서 필요한 외국인 투자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는 미래 유보를 기재

- 단, 우리 정부와 계약을 체결하는 외국인 투자자 및 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동 유보 적용 제외

※ 정부권한 행사로 제공되는 서비스 : 법집행, 교정서비스 등 정부가 비경쟁적, 비상업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

## 서비스 관련 주요 유보

### ■ 국내 전문직서비스(법무·회계·세무) 단계적 개방

- 미국 변호사 자격 소지자가 국내에서 국제공법 및 미국법에 대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. 회계사·세무사의 경우도 유사하게 개방 (※ 국내법에 대한 자문은 국내 자격증 취득 필요)
  - 법무 서비스의 경우 3단계, 회계·세무 분야의 경우 2단계로 추진키로 합의

#### < 법률 >

- 1단계(발효시) : 미국법 및 국제공법자문 허용, 미국로펌의 사무소 개설 허용  
(09.9.26 외국법자문사법 발효를 통해 1단계 개방)
- 2단계(발효후 2년내) : 국내 로펌과의 업무제휴 허용
- 3단계(발효후 5년내) : 미국로펌과 국내로펌간 조인트벤처 사업체 설립 및 동 사업체의 국내변호사 고용 허용

#### < 회계·세무 >

- 1단계(발효시) : 미국회계·세무 자문 허용, 미국 회계·세무법인의 사무소 개설 허용
- 2단계(발효후 5년내) : 국내 회계세무 법인에 대한 미국 회계사세무사의 출자 허용

#### < 외국인 투자지분 >

- PP에 대한 직접투자 한도는 현행 49% 유지
- 국내법인 설립을 통한 PP 투자는 현행 50%를 100%까지 허용 (발효후 3년내)
  - 단, 보도·종합편성·홈쇼핑 분야는 제외

#### < 방송쿼터 >

- PP 등에 적용되는 국산프로그램 의무편성 비율("방송쿼터") 완화
  - 영화 부문 : (현행) 25% → (발효시) 20%
  - 애니메이션 부문 : (현행) 35% → (발효시) 30%

※ 지상파 방송에 적용되는 방송쿼터는 현행 유지
- 1개국 쿼터 : (현행) 60% → (발효시) 80%
  - ※ 1개국 쿼터란?
    - ⇒ 특정 국가의 프로그램이 전체 외국산 프로그램 방영 비율의 특정 비율(현재 60%) 이상을 점유하지 못하게 하는 규제
  - ※ 1개국 쿼터 완화는 지상파, 위성방송, 케이블(SO)에도 적용됨

- 상기 사항을 제외하고는 방송 서비스 관련 사항은 미래 유보함.
  - 미디어간 교차소유 문제, 간접투자한도 문제, 이사 국적제한, 채널 구성과 운영, 만화총량제·prime time quota·제작비 쿼터 등에 대한 쿼터, 해외공동제작 관련 사항 등
  - 많은 논란이 있었던 외국방송 재송신에 대해서도 미래유보

※ 현재처럼 더빙 및 지역광고를 불허키로 함.

### ■ 국내 방송서비스 부분 개방

- 지상파, 위성방송, 케이블사업자(SO)의 인·허가제도·외국인투자지분 한도·방송쿼터 등에 대해 현행 규제수준 유지(현재유보)
- 다만, 방송채널사용사업(Program Provider: PP)을 중심으로 일부 자유화 약속

### ■ 기간통신 사업자에 대한 외국인지분제한 완화

- 외국인 직접투자 제한은 현행 49% 유지
- 국내에 설립한 법인을 통한 간접투자는 100%까지 허용(협정발효 후 2년내)
- 단, 국내 핵심기간망을 보유한 KT와 SKT는 제외
- 공익성 심사(public interest test)를 통해 국가 안전보장 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경우에만 간접투자를 허용할 예정

### ■ 통신·방송 융합서비스 및 디지털 콘텐츠

- 현재 규제 체계에 대해 논의중인 통신·방송 융합 관련 가입자 기반 비디오서비스(subscription-based video services)(예: IPTV)에 대해서는 미래유보

※ 가입자기반비디오서비스 : 당해 공급자가 소유 또는 통제(임차를 포함)하는 전용 전송 용량을 통하여 최종 이용자에게 공급되는 가입자 기반의 비디오 서비스를 말하며,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의 텔레비전(IPTV)과 양방향 방송을 포함

- 다만, 추후 이에 대한 외국인투자 허용수준은 현행 기간통신 또는 케이블 방송사업자에 적용되는 수준을 보장하고, 컨텐츠 규제수준도 현행 케이블 방송사업자에 적용되는 방송쿼터 수준을 보장

- 디지털 시청각 서비스에 대해서는 일단 현행 무규제 상태를 유지하여 경쟁을 통한 발전을 도모하되, 정부가 한국 소비자에게 국산 디지털 시청각 콘텐츠가 손쉽게 이용가능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경우에는 정부가 개입하여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포괄적으로 유보(미래유보)

※ 디지털시청각 서비스 : 인터넷을 통한 것을 포함하여 전송타입에 상관없이 스트리밍 오디오 콘텐츠, 영화 및 기타 비디오 다운로드, 스트리밍 비디오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함. 단, 이 협정 발효일 현재 방송법에 정의된 방송 서비스와 부속서 Annex II 나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-방송 및 통신 서비스 유보에서 정의된 가입자 기반의 비디오 서비스는 해당 범위에서 제외됨.

## ■ 「스크린쿼터」 현행 수준 동결

- 현행 73일을 현재유보로 합의

## ■ 문화유산 및 문화재 보존·복구 관련 서비스

- 문화유산 및 문화재의 발굴·평가·매매 등 문화유산 및 문화재의 보존·복구 관련 서비스에 대해서는 포괄 유보함(미래유보)

## ■ 정기간행물의 출판·유통 서비스

- 여론 형성 기능이 있는 신문에 대해서는 포괄 유보함(미래유보)

- 신문을 제외한 여타 정기간행물의 경우 현행 법령상 외국인투자 허용 수준인 50% 등을 현재유보에 기재 하는 한편, 미국 본사에서 편집된 내용일 경우 국내의 지사·지점이 이를 인쇄·유통할 수 있음을 명시함.

## ■ 교육·의료 및 사회서비스, 공공서비스 포괄 유보

※ 사회서비스 : 국민연금, 보건, 탁아 등

- 공교육(유·초·중·고 교육)·의료 및 사회서비스, 수도·전기·가스·생활환경 서비스 등 공공성이 강한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의 모든 규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유보(미래유보)

- 다만, 고등교육(대학교) 및 성인교육 분야의 경우, 현행 관련법령의 수준에서 개방하고, 원격교육의 경우 비학위 성인교육에 한하여 가능함을 확인
- 의료분야의 경우,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관계 법령상의 특례는 포괄 유보의 범위에서 제외
- 전기·가스에 대한 외국인지분제한 및 산업환경서비스에 대해서도 현행규제수준을 유보(현재유보)

## ■ 육상운송 (여객·화물운송)

- 국민생활과 직결된 여객 육상운송(시내·시외 노선버스 및 택시)에 대해서는 규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유보(미래유보)하여 추후 국가경제의 고도화에 따른 대중교통 체계의 구조개편 가능성에 대비하는 한편,
- 이미 국내법령상 대외개방된 통근·통학버스, 공항버스, 전세 버스, 케도·삭도(모노레일, 케이블카) 서비스에 대해서는 현재유보로 기재하여 추후 외국인의 사업진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임을 명시함.

- 화물운송 분야의 경우, 동 분야에 대한 정부규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유보(미래유보)하여 화물 운송시장의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상황으로 환원시키기 위한 제반 조치를 지속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함.

## ■ 철도운송

- 현행 자유화 수준을 현재유보하는 한편, 추후 TSR(시베리아횡단철도)/ TCR(중국횡단철도) 등 대륙 철도운송망과의 연계에 대비한 미래 유보를 별도로 마련함.

## ■ 부동산 서비스

- 이미 대외 개방되어 있는 부동산 중개·감정평가 분야는 현재유보 목록에 기재하여 현행 개방 수준을 유지할 것을 확인하는 한편, 여타 분야(개발·임대·관리·공급)에 대해서는 포괄 유보(미래유보)함.  
 ※ 부동산 중개·감정평가 등 “전문직 분야의 개방”이란, 외국인들도 국내의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, “국내 자격증이 없는 외국사업자가 아무런 제한 없이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다”는 의미는 아님.

## ■ 건설·건축설계·각종 엔지니어링 서비스·수의 서비스

- 이미 대외 개방되어 있는 현행 법령상 규정에 따라 사무실 구비 요건을 충족할 경우 사업 참여가 가능함을 확인함.

## ■ 시장접근(MA) 의무 적용 범위 상향조정

- 시장접근 의무에 한해 양측은 포지티브 방식으로 자유화를 추진하는데 합의하고, 양측 공히 WTO 도하개발어젠다(DDA) 협상시 제시한 수준까지 각각 양허범위를 상향 조정함.

## ■ 해운서비스·어업 시장 개방문제

- 해운의 경우, 미측은 우리측 요구에도 불구하고 국제해운시장 분야를

미래유보하였고 이에 우리측도 국제여객운송, 연안해운을 미래유보함.

※ 선박수리업을 포함한 해운 관련 부수 서비스(항만내 선박하역·터미널 운영 등)에 대해서는 양국 공히 시장접근을 허용

- 어업 분야와 관련, 미국 영해·EEZ내에서의 조업 등 상업적 활동 (commercial activities)에 관하여는 「공동 수산위원회」를 설치하여 계속 논의키로 합의함.